

『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(2009. 4. 1), 동법 시행령(2009.9.21) 및 행안부「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기준」(2009. 9)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 조례에 반영하고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」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」를 「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
- 법인의 명칭을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미시설공단으로 변경함(안 제1조)
- 임원의 정원을 구미시설공단의 정관에 위임(안 제7조)
-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 개정
 - 임원의 연임은 1년 단위로 함(안 제7조의2)
 - 임원의 임명 시 「임원추천위원회」에서 추천한 자 중 임명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
- 공단에 임원의 추천을 위한 「임원추천위원회」를 둠(안 제18조)
 - 현행 이사장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
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의 내규에 위임
-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개정(안 제9조)
 - 시설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
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
-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헌(안 제15조)
-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·운영을 공단의 사업범위에 포함(안 제25조)
- 공단 자체사업 가능 규정 신설(안 제25조)
- 「구미원예수출공사설치조례」 및 「구미원예수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
설치에관한조례」는 공사변경 등기일부터 폐지(부칙 제3조)
- 재산의 승계(부칙 제4조)
 - 공사의 재산은 공사 변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공단에 승계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부터 59조까지, 제76조, 제78조의2
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, 제63조, 제70조
-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[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- 1973(2010.4.5)]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“임원추천위원회”를 공단에서 운영토록하고,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에 의해 구미원예공사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을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「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」를 「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, 법인 명칭은 “구미시시설관리공단”에서 “구미시설공단”으로 변경하고
- 임원 정원은 구미시설공단 정관에 위임하고, 임원 추천을 위한 “임원추천위원회”는 공단에서 운영하며
-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의 관리·운영을 공단의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2009년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과 행안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,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구미원예공사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을 “구미시설공단”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타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나,
- 통합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